

### 3 의료비의 공비 부담

#### (1) 중도 심신장애인 의료비

신체장애인 수첩(1, 2, 3 급) 또는 요육수첩(㉠, A, ㉡)의 교부를 받은 사람이 의료기관에서 치료를 받은 경우 자기 부담의 상당분을 공비로 부담하고 있습니다. 단, 소득에 따른 제한이 있습니다.

1 의료기관당 1 일 200 엔을 자기 부담해야 합니다. (단, 입원은 1 의료기관 월 14 일까지의 부담, 통원은 1 의료기관 월 4 일까지의 부담으로 됩니다.) 또한, 시·정에 따라 대상자를 확대하고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문의처

시·구·정 사무소

#### (2) 어린이 의료비

어린이가 병원에서 진료를 받은 경우 자기부담의 일부를 보조하는 제도입니다.

어린이 의료비는 시·정이 실시 주체가 되어 실시하는 제도입니다.

시·정에 따라 보조 대상자의 연령 제한이나 소득 제한의 한도액, 자기부담액 등 제도의 내용이 다르므로 자세한 내용은 거주지의 시·구·정 사무소 창구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문의처

시·구·정 사무소

#### (3) 한부모가정 등 의료비

한부모가정의 부모 및 아동(만 18 세에 달하는 날 이후 최초의 3 월 31 일까지의 사이) 등이 병원에서 진료를 받은 경우 자기부담의 일부를 보조하는 제도입니다.

한부모가정 등 의료비는 시·정이 실시 주체가 되어 실시하는 제도입니다.

시·정에 따라 소득 제한의 한도액, 자기 부담액 등 제도의 내용이 다르므로 자세한 내용은 거주지의 시·구·정 사무소 창구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문의처

시·구·정 사무소

(4) 미숙아 양육 의료비

아기의 신체 발육이나 기능이 미숙한 상태로 태어나 신속하게 입원 치료가 필요한 경우 특정 요건을 충족하는 아기의 의료비의 전액 또는 일부를 공비로 부담합니다. 보호자 소득에 따라 일부 자기 부담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영유아 의료비 보조제도와 동시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 소득에 따른 제한이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거주지의 시·구·정 사무소 창구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문의처	시·구·정사무소 《모자보건창구》 <a href="https://live-in-hiroshima.jp/boshihokensoudan/">https://live-in-hiroshima.jp/boshihokensoudan/</a>
-----	--

(5) 자립지원 의료비

심신의 장애를 경감시키기 위해 자립지원 의료에 필요한 비용의 90%를 보험과 공비에서 부담합니다. 자기부담 부분의 10%에 대해서는 가구의 소득 수준 등에 따라 각 달마다의 상한액을 설정하고 상한액을 초과한 부분은 공비로 부담합니다. 급부 대상이 되는 의료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육성의료	신체에 장애가 있거나 그대로 방치하면 장래 신체에 장애가 남는다고 인정되는 질환이 있는 만 18 세 미만인 분으로 확실한 치료 효과가 기대할 수 있는 자에 대하여 행해지는 의료
②	갱생의료	신체 장애를 제거하거나 또는 경감하여 일상생활을 용이하게 하는 것 등을 목적으로 한 의료
③	정신통원의료	정신장애인의 통원 의료를 촉진하고, 적절한 의료를 보급하기 위해 행해지는 통원 의료

문의처	시·구·정 사무소
-----	-----------

(6) 결핵·감염증 의료비

결핵·감염증의 적절한 의료를 보급하기 위해 결핵 및 일부 감염증(에볼라 출혈열, 중동호흡기증후군(MERS) 등) 환자의 치료비는 대상 의료비의 95%부터 전액을 보험과 공비에서 부담합니다. 단, 소득에 따른 제한이 있습니다.

문의처	보건소(지소) , 시 보건소
-----	-----------------

(7) 소아 만성 특정 질병 의료비

만 20 세 미만(신규는 만 18 세 미만)인 분이 의료기관에서 소아만성특정 질병으로 치료를 받은 경우 각종 의료보험을 적용한 후의 자기 부담액에서 인정된 '자기 부담 한도액'을 공제한 금액을 보조합니다.

문의처

보건소(지소), 시 보건소

(8) 특정 의료비 (지정 난치병)

특정 의료비 (지정 난치병)의 대상 질환을 앓고 있는 환자가 의료기관에서 치료를 받은 경우 각종 의료보험을 적용한 후의 자기 부담액에서 인정된 '자기부담 한도액'을 공제한 금액을 보조합니다.

문의처

보건소(지소), 시 보건소

(9) 난임 검사·일반 난임 치료비

난임을 걱정하는 분에 대한 지원으로 부부가 함께 난임 검사를 받은 경우에 난임검사 비용과 일반 난임 치료까지의 비용이 보조됩니다.

보조 한도액은 상한 5 만엔(자기 부담액의 1/2), 한 쌍의 부부당 1 번에 한하며 검사 개시 시의 부인의 나이가 만 35 세 미만이어야 합니다.

문의처

보건소(지소)

(10) 특정 난임 치료비

특정 난임 치료(체외 수정·현미 수정)를 받고 계시는 부부에게 난임 치료의 경제적 부담의 경감을 도모하기 위해 비용의 일부를 보조합니다. 단, 치료를 시작한 시기의 여성 나이가 만 43 세 미만이어야 합니다.

히로시마시, 구레시, 후쿠야마시에 거주하는 분은 거주하는 시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보조 대상이 되는 치료

- 체외 수정 및 현미 수정(이하 '특정 난임 치료'라고 함.)
- 특정 난임 치료 중 정자를 정소 또는 정소 상체에서 채취하는 수술(이하 '남성 난임 치료'라고 함.)

◇ 보조액 · 횟수

• 한 쌍의 부부에 대하여 1 번의 치료당 30 만엔을 한도로 자녀 한명 당 통산 6 회까지입니다.

(처음 보조를 받을 때 치료 개시 시의 부인의 연령이 만 40 세 이상의 부부는 자녀 한명 당 통산 3 회까지)

• 특정 난임 치료의 일환으로 이루어지는 남성 난임 치료를 한 경우에는 30 만엔까지입니다.

문의처

보건소 (지소)

히로시마시, 구레시, 후쿠야마시 주민 : 시청 《난임치료 담당과》